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43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박성훈 · 김기현 · 이달희
이헌승 · 김성원 · 이인선
송언석 · 김기웅 · 고동진
김위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여료 수익이 과태료보다 높은 경우 이를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명의대여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4호, 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제4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제41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② ~ ④ (생략)</p> <p>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② (생략)</p> <p>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7. (생략)</p> <p>8. <u>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u></p>	<p>제33조(등록취소 등) ①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40조(벌칙)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1조(과태료) ①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u>대여한 자</u></p> <p>9.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9.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